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32/2.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인권이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재확인하며,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관 되었으며, 국제 사회가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역점을 두 어 다뤄야하며, 국가적,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 및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유념 하는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와는 무관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함은 국가들의 의무임을 확인한 것을 상기하며,

또한 2006년 3월 15일자 유엔총회 결의안 60/251에서, 모든 인권과 모두의 기본적 자유 보 장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존중되도록 만들 책임 이 인권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한 것을 상기하며,

나아가, 2011년 6월 17일자 인권이사회 결의안 17/19와 2014년 9월 26일자 결의안 27/32를 상기하며,

국제 인권 의제에 대한 공동 소유 의식을 유지해야할 필요성 및 인권 문제를 객관적이고 충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폭넓고 균형 잡힌 의제를 지지할 것이며,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편협성과 맞서는 것을 포함한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메카니즘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가치 체계 및 특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민감함을 지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내 토론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내 토론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행사할 목적으로 경제적 제 재를 통한 위협 그리고/또는 공적 개발 원조에 조건 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부적 압력 사용 및 강압적인 조치를 개탄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법체계를 벗어나는 개인의 행위를 포함하여,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개념이나 관념을 부과함으로써 국제 인권 시스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하고, 그러한 시 도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무시의 표현임을 고려하며,

각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 및 국내법, 개발 우선순위, 다양한 종교적, 윤리적 가치 및 국민의 문화적 배경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재의 결의안이 이행되어야 하고 또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 인권에 전적으로 준거하여야함을 강조하며,

2007년 6월 18일자 인권이사회 결의안 5/1과 5/2를 상기하며,

1.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소속, 재산, 출생 혹은 다른 신분과 같은 어떤 종류의 구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재확인한다,

2. 세계 각 지역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에게 자행되는 폭력행위와 차별을 강하게 개탄한다,

3. 3년의 기간 동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적인 전문가를 임명하기로 결정하며, 이는 다음의 지시를 수반한다: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 및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국제 인권문서의 이행을 평가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와 그 차이를 확인할 것,

(b)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 및 차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폭력과 차별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다룰 것,

(c) 대화에 참여하고 국가 및 유엔기구, 계획과 기금, 지역 인권 메커니즘, 국가 인권기관, 시민사회단체, 학술 단체를 포함하는 다른 이해당사자와 의논할 것,

(d)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조치의 이행을 장려하도록 국가들과 협력할 것,

(e)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다양하고 교차적이며 가중된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다룰 것,

(f)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지하는 자문, 기술적 원조, 역량강화 및 국제적인 협력을 행하며 용이하게 하고 지원할 것,

4. 독립적인 전문가가 제35차 인권이사회 회기부터 시작하여 매년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고, 제72차 회기부터 시작하여 인권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5. 모든 국가들이 독립적인 전문가의 지시 수행에 있어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립적인 전문가가 그들의 국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요청을 한

다면 이에 호의적으로 답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그가 한 권고에 대한 이행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6. 유엔기구, 계획과 기금, 인권 메커니즘, 국가 인권기관, 국가의 독립적 모니터링 틀, 시민 사회, 민간 부문, 기부자 및 개발 기관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독립적인 전문가가 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7. 독립적인 전문가가 지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한다.

8. 인권이사회는 계속해서 이 안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41차 회의

2016년 6월 30일